

제2543호
2017. 10. 1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7-7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29호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제1조~2조)
- 조례 기본방향 규정(제3조)
- 구청장의 책무(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및 사업(제6조~8조)
- 위원회 구성·운영(제9조)
- 협력체계 구축(제10조)
- 홍보(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02-3396-5834, FAX: 02-3396-8792, dokkuy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건축과(02-3396-58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자치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범죄예방진단팀CPO)를 참석시켜야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고 필요시 범죄예방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가 지원 되도록 노력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